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39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중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할인 조항을 개정하여 운임 할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외·고속버스의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 할인에 대한 할인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나이에 따라 초등학생이하 할인 기준과 중·고등학생 할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10조제2호)
- 나. 18세 이하 청소년 할인이 가능한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할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의 학교에 재학 중인 기타학교 학생도 할인 대상에 포함하고 나이에 따라 초등학생이하 할인 기준과 중·고등학생 할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10조제3호)

다. 「민법」 제158조에 따라 종전의 소아 기준 나이 표시를 만6세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개정(안 제10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가. 보내실 곳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 : 044-201-3827 / 팩스 : 044-201-5581
- 이메일 : rcnmed12@korea.kr